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7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제정이유

○ 성주군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시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장애인복지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○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○ 장애인 생산품구매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
나. 예산조치 : 예산부서와 합의 후 예산반영 예정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 2015. 5. 28 ~ 2015. 6. 18(21일간))
바. 보조금심의위원회 : 원안 가결(2015.6.12)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성주군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고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,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장애인가족”이란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1명 또는 그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한다.
3. “장애인복지시설”이란 장애인거주시설,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,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4. “장애인단체”란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성주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는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장애인복지증진계획 수립)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 계획(이하 복지증진계획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애인복지증진의 기본목표와 방향
2.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지원사업) 군수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
2.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
3.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
4.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 사업
5.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기념행사 등

6. 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수화 및 점자교육
7.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
8. 장애인의 문화와 체육진흥활동 등의 지원
9.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

제6조(장애인 생산품 구매)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요물품 중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단체에서 생산품이 있을 경우 생산을 의뢰하거나 생산물품의 구매 요청 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,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」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